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정재동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-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구청장으로 하여금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실적과 성과를 금천구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보고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-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8조).
-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,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, 다른 자치구 및 전문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 나.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# 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예측 불가능한 풍수해로 인한 금천구 주택의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필요한 방지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## 2)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  - 제2조 정의에서 “침수 방지시설”은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<sup>1)</sup>에서 명시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판과 역류방지 밸브를 인용하고 있으며, 또한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

1) 「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19조의2(침수 방지시설)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차수판(遮水板)  
2. 역류방지 밸브

규정함.

-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지원 계획 수립 등(안 제6조).
  -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을 위해 지원 계획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
  - 설치에 따른 추진 실적 보고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함.
-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실태조사 규정(안 제7조).
-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8조).
  -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홍보 등(안 제9조).
  -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, 지원에 관한 홍보 등을 규정함.

#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상위법령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등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
-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에만 의존해 오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일반회계 등 타 회계에서의 지원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침수 방지시설의 보급 확대 및 주민의 재산 및 안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 다만, 제6조제3항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관련 업무 실적 보고 및 결산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본 조항의 적절성은 해당 상임위원들의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